

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문진석의원안)

검 토 보 고

I. 주요내용

- 화재 안전에 취약한 공동주택의 화재 안전성능 보강에 대하여 국가 및 지자체의 지원 근거를 마련함(안 제29조의2제3항 신설 등).

II. 검토의견

개정안의 체계와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, 경미한 자구 수정 외에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(주서본 참조).

(수석전문위원 심 정 희)